

# 경 영 (수시) 공 시

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 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)

## 2. 공시대상

- 대 상 : 직원 김○○ 외 4명
- 사유발생일자 : 2015.11.20
- 경 위 : 정책자금 및 일반자금 대출 부당취급
- 주 요 내 용 : 2급 김○○ 1,206천원,  
3급 강○○ 2,010천원,  
1급 강○○ 1,020천원,  
2급 정○○ 1,530천원,  
3급 강○○ 2,550천원  
합 계: 8,316천원을 변상 처분함.
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정책자금대출 잔액 13,403천원에서 3,216천원 변상처분, 일반자금대출 잔액 17,000천원에서 5,100천원 변상 처분하여 나머지 잔액(22,087천원)에 대하여 대손상각 처리하여 사후관리토록 함.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

